의안번호	제 431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8월 19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431 호

제출연월일 : 2016년 8월1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우리 도는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첨단의료제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공간을 제공하고자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 중으로, 조성 완료된 연구시설용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공급중이며, 2017년 준공예정인 원형지 개발부지 대해서도 先공급을 실시하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의 수요에 대처하고 적기에 연구시설용지를 매각(분양)하려는 것이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분석 및 평가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 당초 임차기관이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임차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예산확보 문제로 보류된 토지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에서 신축이전기관으로 계획을 변경, 신축부지로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 일대

○ 처분시기 : 2016.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후~매각(분양)완료시까지

○ 처분규모 : 부지 43필지 266,583.5㎡

○ 재산가액 : 54,649백만원정도(205천원/㎡ 정도, 최초 분양가(안)

○ 매 수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 처분사유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글로벌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한 연구시설용지에 대해,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적기에 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충북혁신도시 내 공유재산 매각》

○ 위　　치 :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2

○ 처분시기 : 2016.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후

○ 처분규모 : 부지 5,550㎡(약 1,678.9평)

○ 재산가액 : 1,277백만원 (2개 업체 감정평가 평균값)

○ 매 수 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 처분사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기관에서 신축이전 기관으로 계획을 변경, 신축부지로 매입을 희망

3.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공유재산관리계획

2016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3	2,340,679.00	9,346,146				3	2,340,679.00	9,346,146
		건물	4	10,372.00	29,449,760				4	10,372.00	29,449,760
		기타									
	매입	토지	1	8,225.00	2,056,250				1	8,225.00	2,056,250
		건물	2	4,992.00	16,576,275				2	4,992.00	16,576,275
		기타									
	교환	토지	2	2,332,454.00	7,289,896				2	2,332,454.00	7,289,896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2	5,380.00	12,873,485				2	5,380.00	12,873,485
		기타									
처분	계	토지	5	175,212.00	10,253,929	2	272,133.50	55,925,988	7	447,345.50	66,179,917
		건물	2	12,135.65	1,223,383				2	12,135.65	1,223,383
		기타									
	매각	토지	3	20,583.00	3,591,916	2	272,133.50	55,925,988	5	292,716.50	59,517,904
		건물	1	1,454.97	228,831				1	1,454.97	228,831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2	154,629.00	6,662,013				2	154,629.00	6,662,013
		건물	1	10,680.68	994,552				1	10,680.68	994,552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계	토지	2건	272,133.50	55,925,988				
	건물							
	기타							
1	토지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625번지 등 43필지	266,583.50	54,649,000	2016.9.~ 완료시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적기에 매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자	
	건물							
	기타							
2	토지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클러스터 7-1-2	5,550.00	1,276,988	2016.9.	임차용지를 계획변경으로 매입 희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